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다113455, 113462 판결 [2011다113455(본소) 건물명도,
113462(반소) 보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다113455, 2011다1134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나34254, 2011나499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0 선고 2011가단74404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

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1. C

2.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나34254(본소), 2011나4997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본소 청구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항소심이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부분은 아직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1. 3. 22.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원고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3.

원고참가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참가인이 원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의 청구와 원고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 원고의 청구 및 원고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원고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이 누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와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한 원고 및 원고로부터 다시 이를 수탁받은 승계참가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채무에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